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수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7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5일

발 의 자: 박수빈, 강동길, 김 경,
김기덕, 김성준, 김 영철,
김인제, 김태수, 민병주,
박강산, 박 석,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이경숙,
이민옥, 이병도, 이상훈,
이소라,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재란, 한 신,
허 훈 의원(43명)

1. 주문

-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940만 서울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균
등하게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
를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음. 주
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로, 자치구별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음.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강남구 세입은 강북구의 약
25배로 나타남. 이러한 자치구 간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
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
공하는 결과를 초래함.

- 2008년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서울 어느 지역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행정·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됐고,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눈에 띄게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남.
- 하지만 공동과세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가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 2023년 5.46배로 해마다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치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법안이 계속 계류되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음.
-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램. 이에,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 행정안전부

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재조정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 격차다. 특히, 강북권 자치구와 강남구의 재산 세액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고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강남구 세입은 강북구의 약 25배다. 재산세 공동과세분 배분 비율이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재정 격차의 악화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서울시민에게 차별적인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의 절반을 25개 자치구에 교부한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동과세 조정 전·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크게 완화되었다. 2023년 결산 기준, 재산 세액이 가장 적은 강북구와 가장 많은 강남구 간 조정 전 격차는 약 26배지만 조정 후 격차는 약 5.46배로 대폭 줄어든다.

하지만,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 완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조정 후 격차는 2020년 5.1배, 2021년 5.3배, 2022년 5.4배, 2023년 5.46배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은 서울시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20년 국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수년간 법안이 계류되다 끝내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법안이 발의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서울시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